

단양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21-329호

## 2021년도 제2회 단양군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2021년도 제2회 단양군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21년 2월 24일

단양군인사위원회위원장

### 1. 관련규정

-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의 5, 제27조
-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21조의 3, 제21조의 4
- 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2. 임용예정분야 및 인원

근무부서	임용분야	임용직급	임용 인원	근무 기간	임용분야 주요업무
재무과	체납관리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1명	2년 (주35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li><li>• 지방세 체납차량 압류 및 공매</li><li>• 기타 세정 및 징수 관련 업무</li></ul>

※ 근무실적에 따라 5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 3. 응시자격

#### 가. 공통자격(면접시행일 기준)

-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 2) 주소지: 제한없음
- 3) 성별: 제한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거나 마친 사람)
- 4) 연령제한: 만 18세 이상인 자

## 나. 자격기준

### 1) 체납관리: 재무과

임용분야	경력 및 자격 요건
체납관리: 1명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p><b>1. 경력요건</b></p> <p>가. 1년 이상 관련 분야 직무분야 *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p> <p>* 직무분야: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국세·지방세·세외 수입 등 부과, 징수 관련 업무</p> <p><b>2. 자격요건:</b>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실제 운전이 가능한 자</p> <p>※ 1. 경력요건 및 2.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응시 가능</p> <p>- 우대사항: 컴퓨터관련 자격증 소지자 - 주말 또는 공휴일 근무 가능자</p>

※ 경력의 계산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재직중인자는 면접예정일까지 근무기간 합산 단.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 상 실무 기간, 담당업무 필히 명시

## 4. 채용방법

### 가. 1차: 서류전형

- 1) 공통자격 및 등 직무분야 검토 후 합격자 결정
- 2) 채용 분야별 서류전형 상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면접시험 실시
- 3)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

※ 1회 재공고 후 선발인원과 응시인원이 같을 경우 면접시험을 통해 채용 여부 결정하고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 없을 수도 있음
- 4)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나. 2차: 면접시험

- 1) 면접위원: 5명 별도 선정(내부공직자, 외부전문가 등 구성)
- 2)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3) 공무원으로서 인성 및 전문성 등 업무추진역량 종합적인 평가
- 4)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 최고 득점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
- 5) 각 평정요소별 20점을 만점으로하고 5개 등급: 가(20점), 나(16점), 다(12점), 라(8점), 마(4점)에 따라 차등 점수 부여
- 5) 면접시험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 항목을 “마(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마(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평정 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기능성

## 다. 시험일정(안)

응시원서교부 및 접수 기간	시험구분	시험일시	시험장소	합격자발표
2021. 3. 8.(월) ~2021. 3. 10.(수)	서류전형	2021. 3. 15.(월)		2021. 3. 17.(수)
	면접시험	추후공지	추후공지	추후공지

## 5. 보수수준

- 가.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연봉한계액표의 각 임용 등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함
- 나. 임기제 공무원의 연봉한계액(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제34조 관련)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상한액) 47,928천원  
→ 연봉기준액: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은 근무시간을 적용하여 연봉책정  
※ 23,680천원 정도
- \* 연봉외 급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 가. 원서교부: 별지 1~10호를 내려받아 사용
- 나. 접수처: 단양군청 자치행정과 행정팀(군청 2층)
- 다.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가급적 우편접수 권장**)
- 1)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 주소: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청 자치행정과 행정팀
  - 우편봉투: “채용원서 재증” 기재 후 자치행정과 행정팀 채용 담당자(043-420-2503) 유선 전화 후 확인 요청
  - 우편접수 시 응시수수료(라급,마급: 5,000원)는 우체국 통상환증서 동봉 (**수입인지 접수 불가**)
- 라. 원서접수는 평일 9:00~18:00 가능하며, 접심시간(12:00~13:00)에는 접수 불가

## 7. 응시자 제출서류

---

- 가.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및 별도 붙임 참조
- 나. 응시원서(별지 1호 서식) 1부
- 1) 응시수수료: 5,000원
- 응시수수료는 단양군청 민원과 민원행정팀(군청1층) 단양군 수입증지 구입 후 날인된 영수증 첨부
- 다. 이력서(별지 2호 서식) 1부
-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따라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 불분명한 경력은 경력 기간에서 제외함
- 라. 자기소개서(별지 3호 서식) 1부
- 마. 직무수행계획서(별지 4호 서식) 1부
- 바. 최종학교 학위(또는 졸업증명서) 1부

1) 박사학위의 경우: 석 · 학사 학위증명서 함께 제출

2) 석사학위의 경우: 학사 학위 증명서 함께 제출

사.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 경력(재직)증명서는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책,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날인), 발행기관 직인,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

2) 제출된 경력(재직) 증명서로 해당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어려울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됨으로 본인이 경력(재직) 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 확인 받아 제출하여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 상에 담당업무과 응시자격요건의 관련분야 업무내용이 상이할 경우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별지 제6호)” 추가 제출

3) 비상근 근무경력의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를 제출(입증 자료 불명확 시 불인정)

아. 근무여부 확인을 위한 경력 증빙서류 1부 제출

1)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자. 자격(면허)증 등 사본 1부.

차.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응시자 유의사항》

①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

②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이라도 증빙자료 미제출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③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경력증명서는 6개월 이내)을 인정하며, 공고일 이전에 발행된 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에 한함)내의 서류여야 함

- ④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는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첨부
- ⑤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8. 기타사항

---

-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확인한 후 원서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자격 요건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반환해 드립니다.
- 단. 사본은 자체보관합니다.
- 다.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라.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이 책임입니다.
- 마.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한 후 시험을 실시합니다.  
※ 상기 사유로 재공고 시 당초 응시자는 기 제출 서류로 갈음함
- 바.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용포기, 임용결격 사유, 임용 후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된 경우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아. 공고문의 내용이 사정에 따라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실시 3일 전까지 변경사항을 단양군 홈페이지 채용공고란에 별도 공고합니다.

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절차 관련 문의: 단양군청 자치행정과 행정팀(☎ 043-420-2503)

채용예정분야 업무관련 문의: 단양군청 재무과 징수팀 (☎ 043-420-2611)

## 9. 관련법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9., 2018. 10. 16.>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과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15. 11. 18., 2017. 7. 26.>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

- 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처분 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 6. 18.>
-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15. 11. 18., 2017. 7. 26.>
- [전문개정 2009. 2. 6.]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개정 2016. 3. 29.>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폐행위로 별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별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신설 2016. 3. 29.>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폐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바. 안전 감독 업무, 인·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사.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 3. 29.>

④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6. 3. 29.>

[제목개정 2016. 3. 29.]